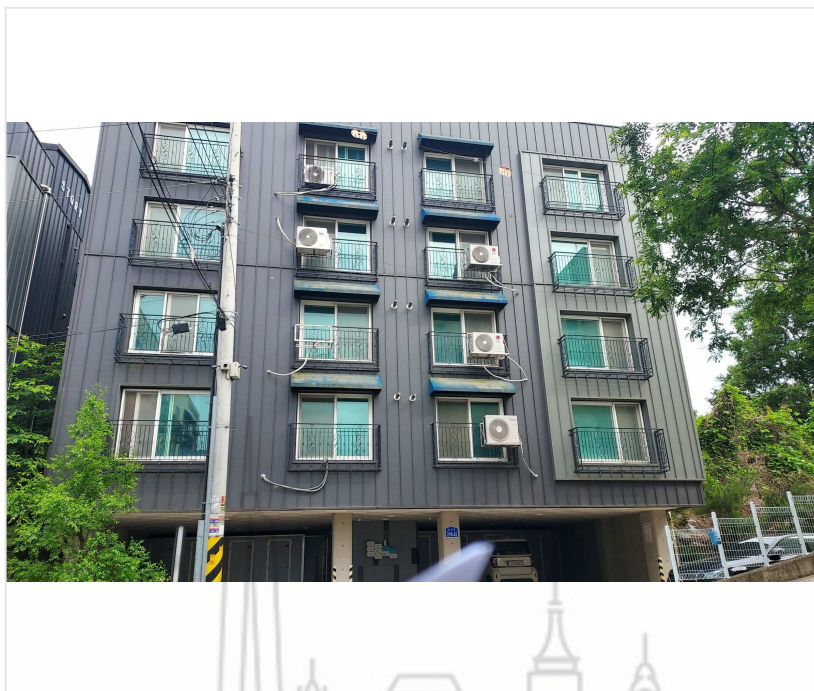


감정평가서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최정진
건명	이근태 소유물건 (2024타경54605)
감정서번호	unam240524-0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남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페이지 : 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송인준

송인준

(인)

감정평가액	일억팔천만원정 (₩180,000,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최정진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근태 (2024타경54605)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06.04	2024.05.24 ~ 2024.06.04	2024. 06. 0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호	구분건물	1호	-	18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8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600-15 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매(강제)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600-15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로 270-42				
이용 상황	공동주택 (다세대)	건물의 구조 및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래브 및기타지붕(정크) 지하1층 지상4층	사용승인 일	2017.09.29
일련 번호	층/호	이용 상황	전유면적(㎡)	대지권면적(㎡)	
1	2층201호	공동주택	67.08	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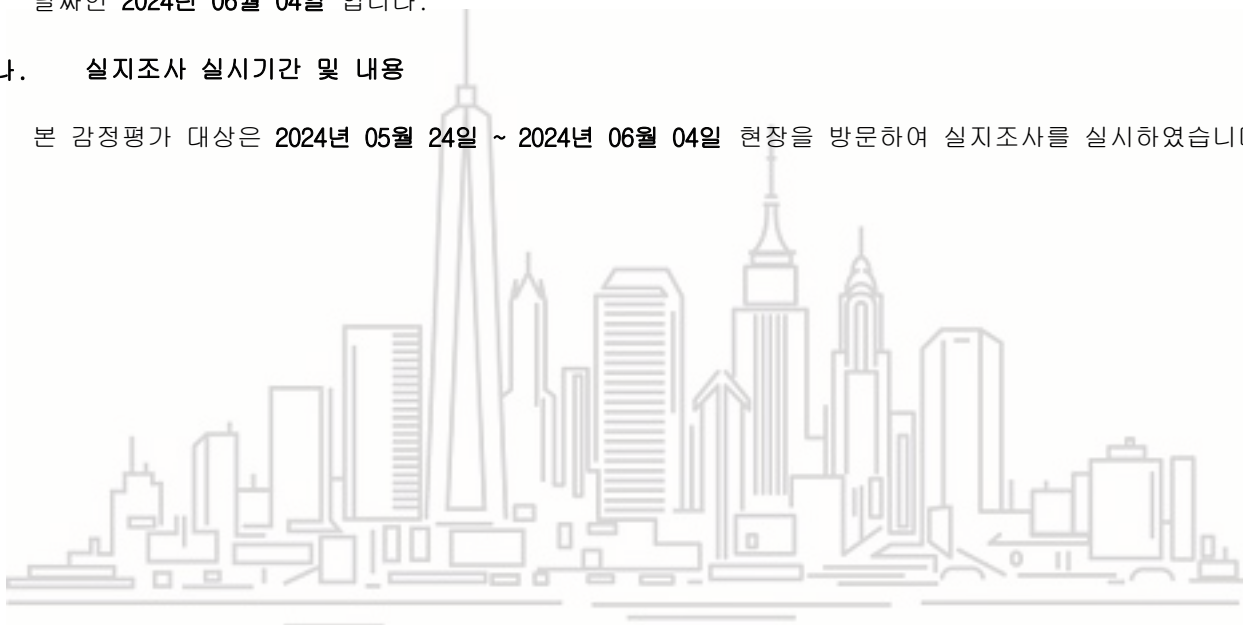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6월 04일 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 감정평가 대상은 2024년 05월 24일 ~ 2024년 06월 04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기준가치(시장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습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의 표기는 귀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나 본 건의 위치확인인 집합건축물대장 및 현장에서 탐문 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내부구조 및 이용 상황 등은 폐문부재로 확인하지 못하여 표준설비 등을 참고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 1) 본 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근 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감정평가 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감정평가 하 되, 대상물건의 특성(주거용 공동주택, 신규분양중인 상가 등, 적정한 임대사례 및 환원이율의 적용 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 검토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 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련번호	소재지 및 층 / 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거래가격 (천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a	원당동 6***-3**호	공동주택	56.29	130,000	2,309,469	2024.03.25

2. 인근 감정평가전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일련번호	소재지 및 층 / 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평가금액 (천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b	원당동 6***-4**호	공동주택	67.08	200,000	2,981,515	2024.01.14 경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참고자료 중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인 다음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소재지 및 층 / 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거래가격(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a	원당동 6*** 3**호	공동주택	56.29	130,000	2,309,469	2024.03.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 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사정보정 치	1.00

3. 시점수정

결정의견	본 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에 의한 시점수정이 적절치 않아, 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권장 기준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으며, 주거용 집합건물 시점수정 치는 거래시점 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준시점이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이후이고, 감정평가시점 당시에 기준시점이 속하는 달의 매매가격 지수가 조사·발표된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달의 지수로 비교한다.
------	--

▶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충청남도)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비교사례	지 역 (산정기간)	유 형	시점수정 치		
			연월	수정치	평균
a	충청남도 (24.03.25~24.06.04)	연립주택	2024년 04월	97.2	≒0.99897
			2024년 02월	97.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일련번호(1): 비교사례 (a)】

가치형성요인		검토의견
	세부항목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건물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대등함.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개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에서 우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결정

일련번호	비교사례	외부요인	건물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 요인비교치
1	a	1.00	1.00	1.16	1.00	1.160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시산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일련번호	비교사례	사례단가 (천원/ ㎡)	사정보정	시점보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면적(㎡)	산정가액(원)	시산가액(원)
1	a	2,309,469	1.00	0.99897	1.160	2,676,225	67.08	179,521,173	18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시산가격의 결정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을 상기 “감정평가액결정에 참고자료”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동향, 감정평가 전례) 등과 비교 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의 결정

일련번호	동 · 호수	면적(㎡)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감정평가액 결정(원)	비고
1	2층201호	67.08	180,000,000	180,000,000	비준가액
합계				180,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당진시 원당동 소재 금암2리 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 및 기타지붕(징크) 지하1층 지상4층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징크판넬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폴리싱타일, 대리석 마감.
 바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북서측 폭 6m 포장도로를 통하여 간선도로와의 접근이 가능하고, 도로상태 및 주차여건은 보통시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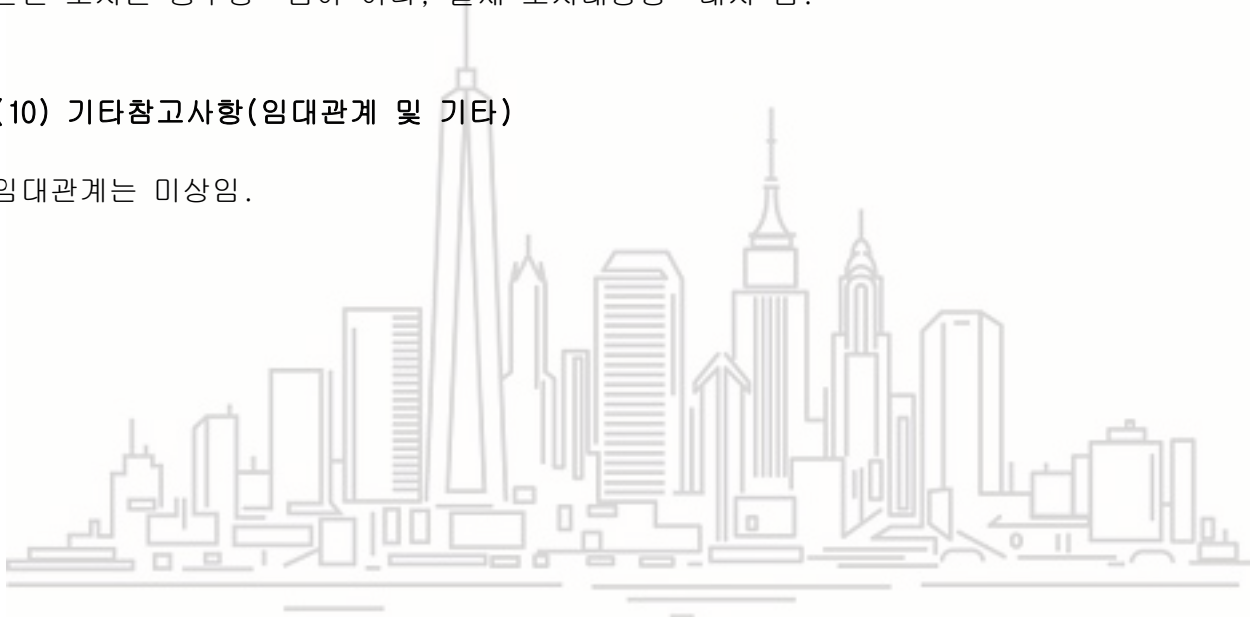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토지대장상 '대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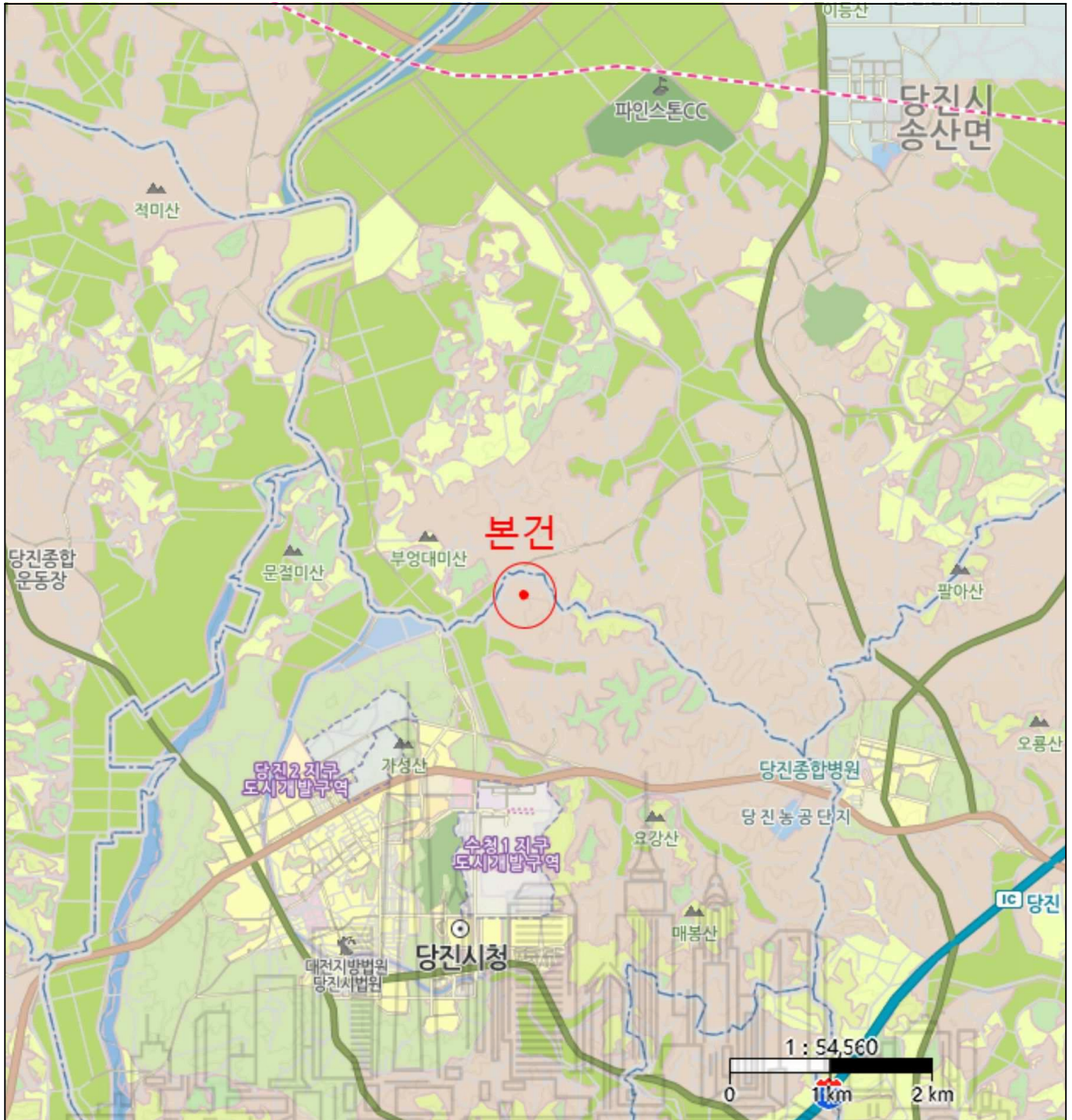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600-15 2층 201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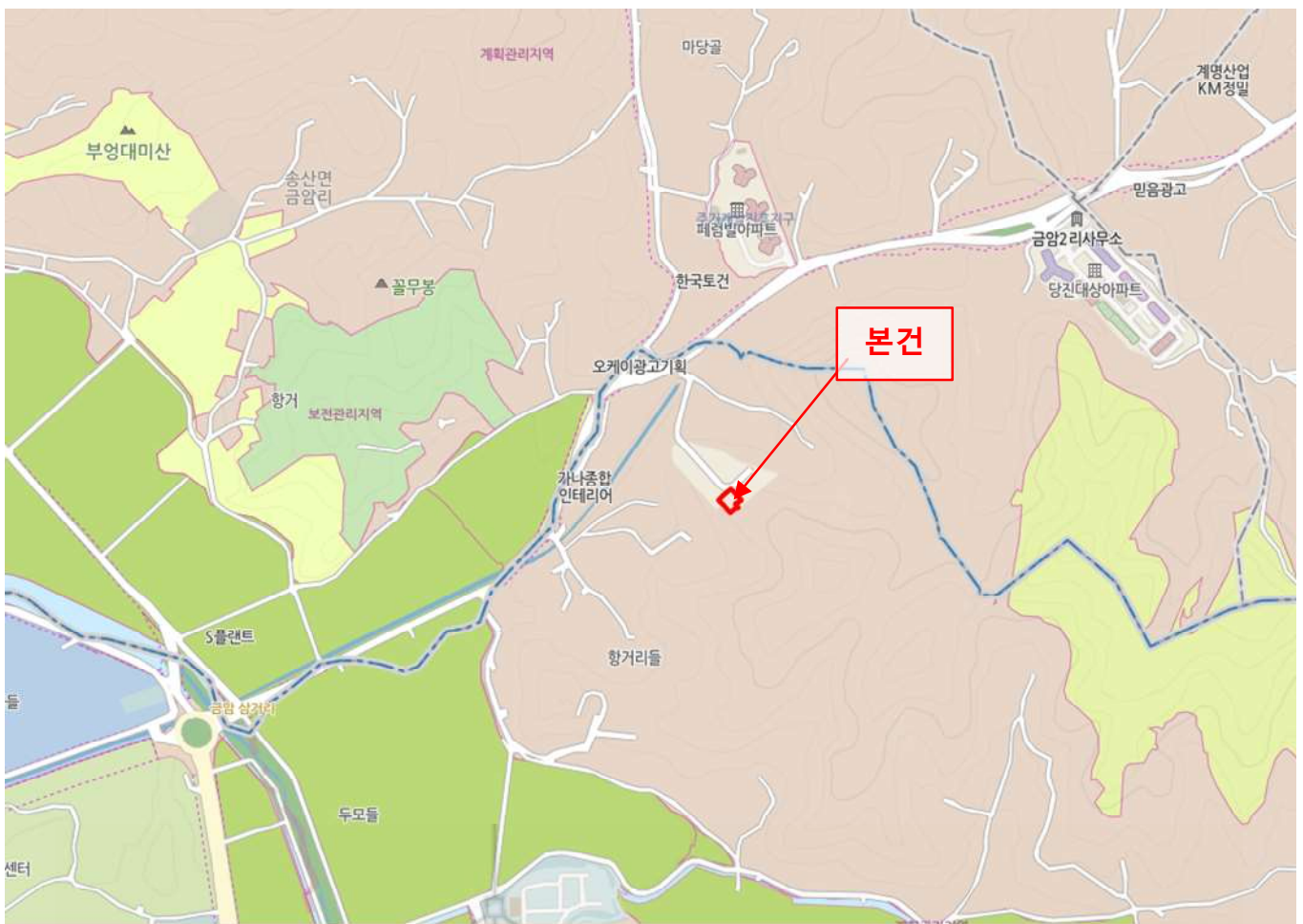


상세위치도및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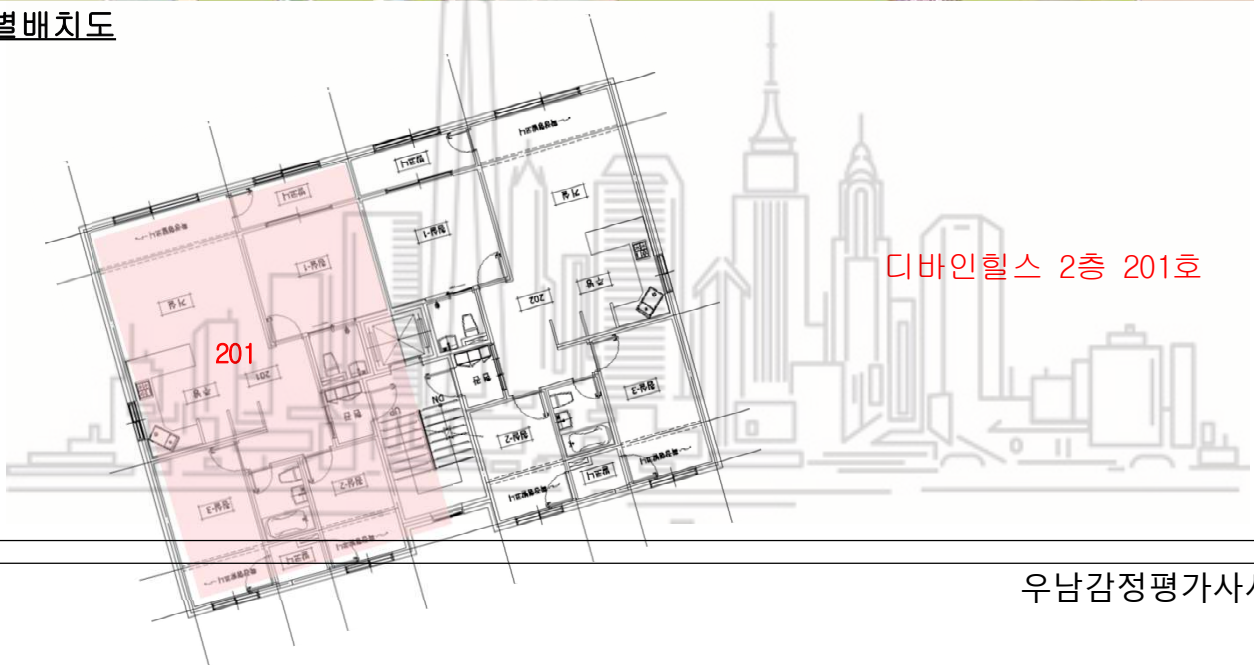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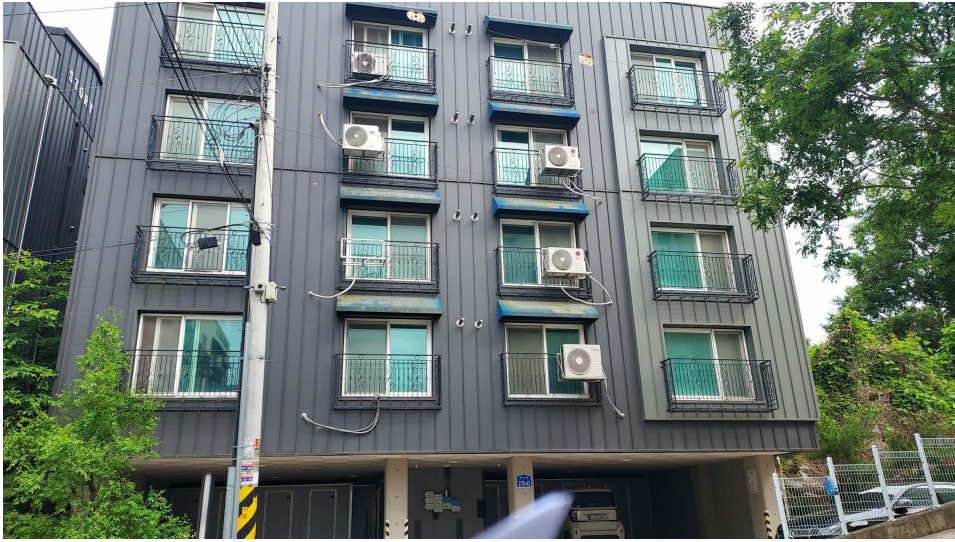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600-15



호별배치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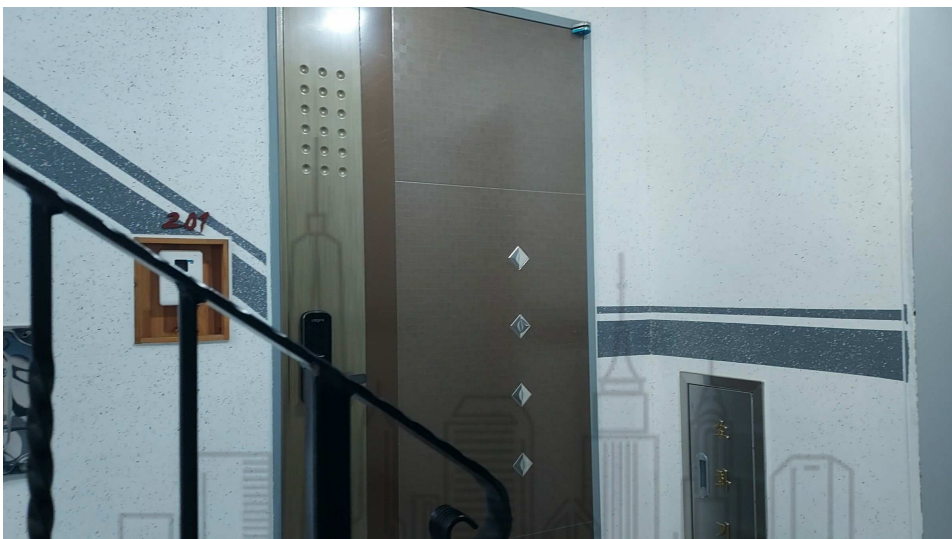


공동현관

사 진 용 지



승강기



현관

사 진 용 지



인접도로

